

예 산 총 칙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8,352,789	12,850,584
일반회계	383,835,175	11,515,055
특별회계	44,517,614	1,335,528
공기업특별회계	18,239,698	547,19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239,698	547,191
기타특별회계	26,277,916	788,33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54,943	37,648
자활기금특별회계	1,728,238	51,84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528,515	135,855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96,533	11,896
기반시설특별회계	431,891	12,957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48,852	10,466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839,770	25,193
수질개선특별회계	16,749,174	502,47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지방채 발행) :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계속비사업) : "해당없음"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110,192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

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 된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